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동시의회규칙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 동 시 의 회 의 장



2020년 9월 11일

안동시의회규칙 제27호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안동시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
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④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39조제2항 중 “반대자의”를 “반대자와”로 한다.

제68조 중 “재적인원”을 “재적의원”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7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의거”를 “따라”로, “의장에”를 “의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별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안동시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u></p> <p><u>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p> <p><u>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u></p> <p><u>④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u></p>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의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68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이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생략)

제72조2(시정에 관한 질문)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공휴일 제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반대자
와 -----

-----.

제68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재적인원 -----
-----.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본
회의-----.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2(시정에 관한 질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48시간-----

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9조-----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86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83

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
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
에 제출한다.

④ · ⑤ (생략)

조----- 따라 -----

----- 의장
에게 -----.

④ · ⑤ (현행과 같음)